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08일

삼례읍장
삼례읍장인
민원실전용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식	김 *비 1987-01-19	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10-08